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2019

발의연월일: 2021. 8. 11.

발 의 자:조경태·홍문표·강대식

이채익 • 전봉민 • 박완수

김상훈・이명수・윤재갑

태영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예방,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스마트폰 중독이 심해지면서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나아가 따돌림 등의 학교폭력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인터넷 도박게임 등으로 청소년들의 도박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청소년 시기의 도박문제는 성인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에 청소년에 대한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및 도박 중독의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법률 제 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성교육"을 "성교육,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 존 예방, 도박 중독의 예방"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	
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	
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誤用)・남용(濫用)의	
예방, <u>성교육</u> , 정신건강 증진	<u>성</u> 교육,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도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u>박 중독의 예방</u>
다.	